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35
----------	-------

발의연월일 : 2026. 8. 11.

발 의 자 : 윤후덕 · 임미애 · 염태영
백혜련 · 한정애 · 서영석
이광재 · 홍기원 · 어기구
전진숙 · 조승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7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율과 공제대상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자산 형성 기반이 취약하고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의 일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7로 상향하고,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7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월세액의 100분의 20을 공제하고, 해당 청년 세액공제에 별도의 적용기한을 두지 아니하도록 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를 “17(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17]”을 “20)”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95조의2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지급하는 월세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인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u>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u>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 ----- ----- ----- ----- ----- ----- ----- ----- ----- ----- ----- ----- ----- <u>17(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 ----- -----

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
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
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
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
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
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
는 것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② ~ ④ (생략)

----- 20)-----

----- .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2백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
는 것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
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
외한다)가 지급하는 월세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인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

② ~ ④ (현행과 같음)